



가정 폭력,  
성폭력,  
또는 스토킹의  
피해자라는 이유로 일자리를  
잃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.

뉴욕시는 이러한 범죄로 고통 받은 뉴욕  
시민들이 고용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 
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.

뉴욕시 인권위원회 (NYC COMMISSION ON HUMAN RIGHTS) 는 고용주가 합당한 편의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와 생존자가 고용을 유지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편의에는 무급 휴가, 근무 시간 조정 및 직장에서 직원들의 안전을 지키는 보안 대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.

고용주는 귀하가 피해자라는 이유로 귀하를 해고하거나 고용을 거부하거나 또는 다른 어떠한 방식으로든 차별할 수 없습니다.

문의처:

**NYC** 인권위원회

[www.nyc.gov/humanrights](http://www.nyc.gov/humanrights)

또는 전화 311

   @NYCCHR

